

제2차산업경제위원회
2017.11.30.(목)

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
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오성일

**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
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**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11월 21일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28일

3. 제안 이유

-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개정(17.01.28.시행)
 -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 등의 면제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
-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의 면제확인(안 제2조)
-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(안 제3조)
-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확인(안 제4조)
- 안전인증(확인신고),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 신청을 위한 수수료(안 제5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
에 관한 조례안'은 상위법인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의
개정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 등의 면제확
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조
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
- 제정되는 조례안의 조문체계와 목적 등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다
만, 제정되는 조례안의 제5조 수수료 부분 산출근거와 이에 따라
예상되는 연간 수입현황 그리고 도내 관련 기업이 받을 수 있는
혜택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.